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 유 재 산 및 물 품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내·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민생경제 침체 등의 비상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특례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경제적 비상상황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 등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근거를 마련

가. (범위) 한시적 요율 인하 범위를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·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

* (현행) 재난피해 시 → (개선) 재난피해 시 + 경기침체 시

나. (대상) 재난 시는 피해 입은 모든 사용자가 대상이나, 경제침체 시 등의 경우는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소상공인*, 중소기업** 업종으로 한정

* 「소상공인기본법」 §2에 따른 소상공인, **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§2에 따른 중소기업

다. (절차)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대해,
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료 요율 인하를 결정

* (국유재산) 기간, 요율 및 감면한도, 적용대상 등을 기재부고시로 규정
(공유재산) 기간만을 행안부고시로 규정,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율 결정

4. 주요토의과제

비상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 지원대책 마련 필요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7. 00. ~ 7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단서 중 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사용허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
2.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영하는 업종의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
 - 가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
 - 나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

제31조제1항 단서 중 “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

2.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영하는 업종의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

가. 소상공인

나. 중소기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·대부료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제1항단서 각 호 및 제31조제1항단서 각 호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사용료)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(時價)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가격(評定價格)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(月割) 또는 일할(日割)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, <u>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</u>	제14조(사용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사용허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</u>
<u><신 설></u>	2. <u>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</u>

② ~ ⑩ (생략)

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
<신설>

하는 자가 직접 경영하는 업종의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

가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“소상공인”이라 한다)

나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

②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 -----

---. --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

---.

1.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

른 피해를 입은 경우

<신 설> ② ~ ⑨ (생 략)	2. <u>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</u> <u>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</u> <u>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</u> <u>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</u> <u>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</u> <u>하는 자가 직접 경영하는 업</u> <u>종의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</u> <u>기 위한 경우</u> <u>가. 소상공인</u> <u>나. 중소기업</u> ② ~ ⑨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686